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제1583호 2009. 10. 21.

고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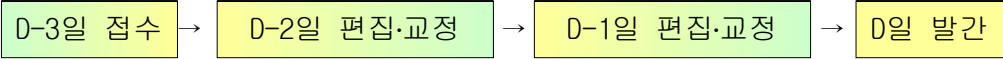
제2009-47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 폐기 고시 2
 제2009-48호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측량성과고시 3

공 고

제2009-82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5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2009-47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 폐기 고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 중 망실된 기준점의 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중랑구청장

명 칭	관리번호	평면직각중횡선수치		위 치(소재지)	설치년월일
		종선	횡선		
도근점	6211	456616.27	208856.91	신내동 359-34	2006-10-25
도근점	6212	456678.80	208860.28	신내동 359-33	2006-10-25
도근점	6213	456753.88	208864.21	신내동 359-28	2006-10-25
도근점	9501	456807.47	208848.41	신내동 355-2	2005-03-30
도근점	9502	456844.80	208753.90	신내동 319-4	2005-03-30
도근점	9503	456873.26	208681.87	신내동 319-4	2005-03-30
도근점	9505	456882.78	208656.44	신내동 313-4	2005-03-30
도근점	9506	456926.67	208546.77	신내동 314-5	2005-03-30
도근점	9507	456954.36	208469.22	신내동 314-3	2005-03-30
도근점	9511	456731.08	208454.47	신내동 694-32	2005-03-30
도근점	9512	456643.57	208455.61	신내동 624-4	2005-03-30
도근점	9516	456535.78	208507.69	신내동 790	2005-03-30

도근점	9517	456522.51	208552.00	신내동 790	2005-03-30
도근점	9518	456494.51	208544.81	신내동 397	2005-03-30
도근점	9521	456420.39	208598.32	신내동 산67-13	2005-03-30
도근점	9522	456380.14	208606.18	신내동 397	2005-03-30
도근점	9523	456286.62	208666.95	신내동 397	2005-03-30

서울특별시중량구 고시 제2009-48호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측량성과고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였기에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중량구청장

○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설치 내용3

지 적 측 량 기 준 점			위치(소재지)	평면직각중횡선수치	비 고
명 칭	관리번호	설치년월일			
도근점	6601	2009.10.14.	신내동 643-1	중선 : 457024.80 횡선 : 208373.34	
도근점	6602	“	신내동 697-5	중선 : 456998.26 횡선 : 208459.40	
도근점	6603	“	신내동 313-22	중선 : 456954.62 횡선 : 208522.14	

도근점	6604	“	신내동 313-22	중선 : 456905.32 횡선 : 208640.48	
도근점	6605	“	신내동 320-4	중선 : 456859.60 횡선 : 208780.75	
도근점	6606	“	신내동 321-17	중선 : 456829.75 횡선 : 208860.23	
도근점	6607	“	신내동 71-37	중선 : 456820.49 횡선 : 208895.10	
도근점	6608	“	신내동 327-1	중선 : 456716.69 횡선 : 208885.46	
도근점	6609	“	신내동 333-2	중선 : 456557.16 횡선 : 208877.67	

지 적 측 량 기 준 점			위치(소재지)	평면직각중횡선수치	비 고
명 칭	관리번호	설치년월일			
도근점	6610	“	신내동 333-2	중선 : 456440.17 횡선 : 208871.27	
도근점	6611	“	신내동 375-6	중선 : 456330.08 횡선 : 208865.18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13-2번지 일대 (11점)		
측 량 년 월 일			2009. 10. 14.		
측량성과보관장소			중랑구청 지적과, 대한지적공사 중랑구지사		
비 고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82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보훈회관의 입주단체 및 시설 이용자 등 관련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회관의 운영협의회(안 제5조)

1.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지회장들과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랑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2. 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
3. 협의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함.

나. 보훈회관의 운영 (안 제6조)

1.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위탁신청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함.

다. 보훈회관의 협약체결 등 (안제7조)

1.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하도록 함.
2.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함.
3. 위탁대상시설물 중 민간에게 사용 허가된 지상1층 소재 임대시설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름.

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안 제9조~ 안 11조)

1. 보훈회관 위탁사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중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둠.
2. 중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위탁기관 선정 및 보훈회관 재위탁 기관 선정을 심의·의결함.
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131-701, 전화: 02)490-3359, FAX: 02)490-3629, E-mail : lovebaby@jungnang.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주민생활지원과(☎490-335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